

제266회 영등포구의회
2025년도 제2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제 안 설 명 서



2025. 11. 21.

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

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과
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!

신길6동, 대림1·2·3동 지역구의
더불어민주당 유 승 용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.

본 개정안은 우리 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규정 상
기준에 미비했던 법률상담관의 해촉규정을 신설하여
법률상담 서비스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,
구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할 수
있도록 하고자 하며, 법률상담의 범위에
아동·청소년 권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
사회적 약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.

그 밖의 개정사항으로는,
기존 조례의 조항 중 현행 법령체계에 맞지 않거나
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표현을 모범적으로 정비하여
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
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.

주요 개정사항으로는
안 제4조에서의 상담 범위 규정에
아동·청소년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,
안 제7조의2에서
법률상담관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
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,
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
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